##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98

발의연월일: 2024. 1. 7.

발 의 자:황정아·박용갑·한민수

채현일 • 박정현 • 장종태

박지원 · 허성무 · 민형배

박희승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구장비 가 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.

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음.

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,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(안 제16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기요금을 주택용・일반용・교육용・산업용・농사용 및 연구개발용 등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16조(전기의	공급약관)	1 ~	제16조(전기의 공급약관) ① ~
⑤ (생 략)			⑤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	⑥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
			약관을 작성하는 때에는 전기
			요금을 주택용·일반용·교육
			용・산업용・농사용 및 연구개
			발용 등 전기 사용 용도에 따
			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
			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은 농사용
			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
			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